
과업지시서

사 업 명 :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발 주 자 : 부산-김해경전철(주)

2022. 10.



목 차

I.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주요 사업내용	1
4. 유지보수 대상 및 내용	2
II. 과업지시서	3
과업지시서	3
III. 서식자료	30
※ 서식자료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31
【서식-2】 경영 실태(2021년)	32
【서식-3】 유지보수 사업 실적(최근 3년)	33
【서식-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34
【서식-5】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35
【서식-6】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36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가. 과업명 : 부산김해경전철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 나. 사업기간 : 2023. 1. 1 ~ 2024. 12. 31(24개월)
- 다. 입찰방식 : 최저가 입찰
- 라. 사업장소 : 부산-김해경전철(주) 차량기지 및 전 역사(21개역)

2. 사업목적

- 가. 부산-김해경전철 승강기 유지보수를 전문 업체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 나. 승강설비의 수명 보전과 정상기능을 유지

3. 주요 사업내용

-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점검
- 나. 각종 점검(특별, 취약개소 점검 등)
- 다. 기계 유지보전, 청소(외부 E/L 승강로 청소 년 1회), 정비 및 보수
- 라. 관계법규에 의한 검사 입회 · 조치 및 법적 제한을 받는 업무의 법적책임
- 마. 기기의 이력관리(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점검결과 입력) 등
- 바. 안전사고 시 후속조치(보험처리 포함)
- 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 준수
- 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자. 중보수 부품 교체(내역서 기준) 및 미확정 부품 교체 등

4. 유지보수 대상 및 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승 강 설 비			
	E/L	E/S	M/W	계
부산김해경전철	81	26	2	109

※ 계약기간 내 물량증감 시 계약 변경 또는 정산가능

나. 권역범위

구 분	역 사	대 상
부산-김해경전철	사상 ~ 가야대(차량기지)	E/L 81대(화물용 1대 포함) E/S 28대(무빙워크 2대 포함)

II. 과업지시서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김해경전철 승강설비(E/L, E/S)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부산-김해경전철(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점검보수요원”이라 함은 부산-김해경전철에서 승강설비를 담당하는 “계약 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
- ② “감독자”는 부산-김해경전철 직원 중 승강설비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③ “현장대리인”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역업무 수행 및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는 “계약상대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관계법령】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 외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②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기술표준원 제정)
- ③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 ⑤ 산업안전보건법
- ⑥ 근로기준법
- ⑦ 철도안전법(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
- ⑧ 중대재해처벌법
- ⑨ 기타 관계법령

제 4 조 【용역의 개요】

① 용 역 명 :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② 용역 대상

(단위 : 대)

구 분	승 강 설 비			
	E/L	E/S	M/W	계
부산김해경전철	81	26	2	109

※ 계약기간 내 물량증감 시 계약변경 또는 정산가능

③ 용역기간 중 기기의 증설, 운휴 등으로 점검대수, 점검회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한다.

- 용역기간 중 유지보수료 증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기존 계약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역의 목적

대상 승강설비(E/L, E/S)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 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설치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E/S, E/L) 점검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과 관련규정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승강설비 (E/L, E/S)의 점검/보수 및 중보수(부품교체) 용역을 “발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한다.

- 용역 범위 ※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구 분	역 사	대 상
부산김해경전철	• 사상~가야대(기지포함)	E/L 81대(화물용 1대포함), E/S 28대(무빙워크 2대포함)

⑥ 승강설비 관련 교육

“계약상대자”는 역사에 근무하는 역직원 또는 “발주자”의 승강설비(E/L, E/S) 관련 직원에 대한 각종(비상조치 및 운전, 안전등) 교육에 대하여 “발주자”的 요청이 있을시 교육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교육실시 후 교육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발주자”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E/L, E/S) 용역계약과 동시에 승강설비를 대상으로 인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기별 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용역 개시 후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점검 시 직전업체와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⑧ 부품교체

-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E/L, E/S) 관리에 있어 부품교체 시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별도견적 정구(미확정 부품 해당) 및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완료확인서(금액포함)를 완료 즉시 보고 해야 한다. **【붙임 1】**
- 나. 고장부품 중 “발주자”에 보유 부품이 있을 경우, 감독자 확인 후 보유 부품으로 선조치해야 한다.

⑨ 보유장비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E/L, E/S) 유지보수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붙임 2】**

제 5 조 【과업 내용】

-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표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매월 기입하고, “발주자” 요청시 출력하여 제출한다.
(자체점검표는 “발주자”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고장예방을 위한 정비활동, 제어반 내부 청결상태 유지, 부품수리, 카내 인터폰, 화재연동 및 승강기 관련 회로관리, 카내 환기팬 등 수리 또는 교체를 실시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외부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청소를 “발주자”가 지시하

는 시기에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의거 시행하는 법정 검사에 있어 검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검사준비, 입회 및 조치)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비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시에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NIIS)에 승강기 점검 관련 자료 (작업결과, 현황 등)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매월 자체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철도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철도안전관리 체계 이행을 위한 “발주자”的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점 3개월 전에 승강기 중보수 및 부품교체(예정) 자료 작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법정유지보수인력 자격】

법정유지보수인력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정유지보수인력의 신상명세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등을 점검보수요원 투입 또는 교체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정보수 인력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승강기 보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제 7 조 【법정유지보수인력 배치 및 근무방법】

“계약상대자”는 법정유지보수인력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점검보수를 시행한다.

- ② 승강기 간힘 사고 및 안전사고 등 비상조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사업장과 가까운 장소에 상시 대비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법정유지보수인력을 유지보수업 필수 조건인 7명이상으로 운용해야 한다.
- ④ 법정유지보수인력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가. 자체점검(월 1회) 및 고장발생 시 수리(접수 및 통계관리)
 - 나. 기계실, 피트층 등 기기 청소(년 1회 외부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
 - 다.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 및 조치
 - 라. 정기검사를 대비한 사전점검(검사 실시, 사후조치 포함) 실시, 입회
 - 마.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 ⑤ 법정유지보수인력 결원 시 즉시 자격자를 충원한다.
 - 고장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특별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을 포함한 사전 예방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 후 교체 최소 3일 전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점검을 실시하여 기기상태, 고장원인, 조치방법, 조치 기간, 필요부품 등 정밀하고 상세히 분석 관리한다.
 - o 기기 이상 징후 발견에 따른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 o 기타 안전사고 및 상급기관의 요구 등 “발주자”가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때.
 - 취약개소(유지보수관리부서의 장이 지정) 점검 · 관리
 - 승강설비(E/S, E/L) 개 · 보수를 위한 샘플설치 및 제반업무
 - 각종축제(가야문화, 부산 불꽃축제, 유채꽃, 락페스티벌 등) 및 공연, 대학수학 능력시험, 스포츠, 종교 단체 행사시 비상대기(10분거리)
 - 사고조사 관련 외부기관 방문 시 입회
 - 자연재해(태풍 · 우수 · 강풍 · 지진 등) 발생 시 복구 및 비상조치
 - 철도안전체계심사 시 “계약상대자” 의무(인터뷰, 안전관리, 교육 등) 준수

- 기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통계관리 수행

제 8 조 【고장접수】

고장접수는 유선 또는 인터폰으로 하고 접수즉시 접수시간, 출동가능예정시간, 접수자 성명 등을 친절하고 상세히 응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 되되, 서식의 종류는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 ① 착수서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각 2부 씩 제출

- 가. 착수계(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서약서 등 “발주자” 양식)
- 나. 유지관리계획서
- 다. 점검보수요원 명단 및 경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라. 점검보수요원 신원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마. 점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주, 야간)
- 바. 부품 교체 주기표
- 사. 중보수 이행계획서

- ② 완료서류(완료계) : 점검보수완료 후 익월 5일까지 각 1부씩 제출

- 가. 점검일정 및 점검요원 명단
- 나. 점검내역서
- 다. 보수일지
- 라. 기계이력관리대장 수선내역 기록유지
- 마. 부품 교체 내역 및 중보수 내역
- 바. 중보수 작업계획서
- 사. 고장처리 관리대장

- ③ 중보수서류 : 중보수 작업 발생시 “발주자”에 계획서 등을 제출, 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착수하고, 점검 및 보수 중 발견된 고장은 즉시 보수하고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가. 중보수 작업 계획서

나. 중보수 작업 완료계

- ④ 기타서류 :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점검 시행 시
 가. 원인분석 보고서(사고발생시, 지급부품교체 시)
 나. 과업지시 및 이행서
 다. 점검 결과표
 라.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양식

제 10 조 【현장대리인】

-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역업무 수행 및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점검보수요원을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는 “계약상대자”를 대리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 가. 점검보수요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감독
 나.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감독자와의 연락과 조정
 다. 점검보수요원의 규율질서의 확립과 본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이행

제 11 조 【유지보수품질의 수준】

- ① 각 기기별 점검보수 수준은 아래 항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월 고장회수 : 호기당 2회 이하, 단 고객부주의, 이물질 등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
 나.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시간 : 호기 당 3시간 이내(출동시간 제외)
 다. 인명피해 사고 시 출동시간 : 신고 후 20분 이내일 것
 라. 고장출동시간 : 신고 후 40분 이내일 것
 (비영업시간 00:30~05:00은 비운행시간 제외)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하여 “발주자”는 다음의 각 표와 같이 당월 대가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분	내용(고장건수 대당)	페널티	비 고
페널티	· 동일호기 고장 발생 3건	해당호기 월보수료 20% 삭감	-고급 기술자 입회
	· 동일호기 고장 발생 4건	해당호기 월보수료 50% 삭감	
	· 동일호기 고장 발생 5건 이상	해당호기 월보수료 100% 삭감	

구분	내용(비운행시간 대당)	페널티	비 고
페널티	· 3시간 초과 ~ 6시간 미만	해당호기 정밀점검 1회 해당호기 월보수료 50% 삭감	-고급 기술자 입회
	· 6시간 초과	해당호기 정밀점검 1회 해당호기 월보수료 100% 삭감	-고급 기술자 입회
	· 법정검사 불합격시	해당호기 월 보수료 100% 삭감	
	· 고장출동 1시간 경과시	해당호기 월 보수료 100% 삭감	
	· E/L 고장으로 고객 간힘시	해당호기 정밀점검 1회 컴플레인 비용 : 업체 부담	장비결함시
	· 점검인원 및 점검업무 계약서 및 특기사항 미준수시	당사업장 월보수료 50% 삭감	

③ 유지관리 상태불량 및 점검 미실시 등으로 재실시를 통보(유·무선 포함)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기 월간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 유지보수 대가정산 : 월간계약금액 - 해당기기 계약금액

④ 과업지시서 제18조 ②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언론보도 등으로 “발주자”가 비재산적손실(“발주자”이미지 실추)을 입은 경우는 월용역비(대당) 100%를 삭감한다.

제 12 조 【고장범위, 비운행시간의 정의 및 제외사항】

① 용어의 정의

가. 고 장

“고장”이라 함은 승강기(E/L, E/S)의 자동운행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

단, 외부요인에 의한 파손 및 이물질 등에 의한 고장은 제외한다.

나. 비운행 시간

비운행 시간이라 함은 고장에 따른 신고시간에서부터 수리완료 시간까지를 말한다.(비영업시간 00:30~05:00은 비운행시간 제외)

- ②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제11조의 폐널티를 부가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건축물하자,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없이 승강기를 개량 또는 임의 변경하여 고장 발생 시

나. 승강설비의 신설, 교체, 개선공사(수선)등에 따른 하자발생 시

다. 이물질에 의한 운행정지 및 고장발생 시

1) 도어씰이나 도어 레일 등에 이물질이 끼어 발생한 장애

2) 스텝(콤,데마케이션 포함)인입구, 센서류 등에 끼인 이물질로 인한 장애

라. 타 설비 장애에 따른 운행정지 및 고장발생 시

1) 화재감지기 작동 등 소방설비 연동에 따른 장애

2) 정전, 순간전압강하 등 전력공급계통 장애로 인한 고장

마. 고장 발생 전 “발주자”的 양해를 구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 ③ 전체 고장 발생률이 5%이하로 유지되고, 점검보수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시는 제11조에 불구하고 해당 월의 점검보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승강설비(E/L, E/S) 용역의 면책사유의 세부 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비운행』의 범위

1) 정상적인 작동방법(순서)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한 경우

2) 정상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장애는 비운행의 범위에서 제외 : 【붙임 4】

예) 표시등(경광등 포함), 안내방송 스피커, 기기 각부 외함의 경미한 손상
(콤, 데마케이션, 스위치) 등

3) 비운행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표시등, 안내방송 스피커 등 정상기능 저해요소는 고장에 포함한다.

나. 『정상운행 중 외부의 충격에 의한 고장』의 범위 : 【붙임 4】

1) 승객의 불안정한 탑승, 규격초과 사용, 외력작용, 사용미숙, 사용자 부주의 등

점검보수용역의 수준과 별개로 발생되는 외부적 고장

예) 안전스위치 작동, 부하측 차단기(휴즈) 트립, 미고장의 오인신고, 구출 목적에 의한 고의파손 등

2) 취객, 부랑아 등 통행승객의 고의적 파손 및 장애물 협착 등

예) 외장재 파손, 기기 구동부(센서부) 장애물 협착 등

3) 정상운행 중 외부의 충격에 의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되나 정상운행이 불가할 시는 비운행 범위에 포함한다.

제 13 조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① 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을 기준하여 월간단위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확인을 필한 후 제9조 ②항의 완료서류를 익월 5일까지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월 유지보수금액은 24개월 분할 지급 + 작업량에 따라 정산(부품 또는 중보수)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과업지시서 제2장 특기사항 제1조 7항 참조
- ③ 점검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유지관리비는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 한다.
- ④ 해당 월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서면(문서)으로 시행하는 비상근무(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산지급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신규계약이 늦어질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용역비는 당해연도 계약금액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14 조 【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사고 또는 중고장 발생 시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유선보고 후 현장출동하고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현장대리인은 매월 점검계획(일정, 대상)을 세워 전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당일 점검을 마친 후에도 감독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환수 및 추징】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의 결정상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 16 조 【금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일상적인 업무사항,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도시철도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 또는 점검보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발주자” 영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나. 사업수행에 태만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다. 계약상 정해진 중보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행위
 - 라.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마.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바. 승강설비의 임의 폐쇄, 정지 행위
 - 사. “발주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아. “발주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자.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 차.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 17 조 【업무인계 인수】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구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조하여 “계약상대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1주일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18 조 【관리 및 책임】

①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규에 의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관련법규 준수 등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법적 책임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과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사고

나. 점검소홀,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된 모든 사고

다. “발주자”的 지시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하여 발생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③ 모든 사고 및 고장의 원인 규명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 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발주자” 승객 또는 “발주자”的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발주자”에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的 종사원이 입은 일체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이행)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양도금지 및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으로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는 “발주자”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만약 용역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0 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승강기의 고장을 발생시켰거나, 고장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 21 조 【자료제출】

- ① “계약상대자”는 독점하는 부품 또는 용역수행 중 습득한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자”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및 법규의 제, 개정사항 등 승강기 관련 정보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 【안전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정비는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에 안내표지 및 간이 훈스 설치 등 부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③ 보수장비 및 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점검보수요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각 기능실 등이 보안구역임을 감안 출입에 대한 시건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주자”的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 대책을 수립 보안관련 정, 부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용역 참여인원 교체 시는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발주자” 보안업무운영규정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집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료목록을 제출한 후 “발주자”에 반납조치하거나 “발주자”的 승인을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 ⑤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⑥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보안구역 출입 시 시설물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출입하여야 한다.
- ⑦ “발주자”는 자료관리와 보안상태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보안각서를 별도 양식에 의거 자필작성 제출 한다.

제 24 조 【안전 · 보안교육 및 품위유지】

-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요원에게 법령(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철도종사자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직무교육, 보안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的 관련 교육자료 및 장소 제공 요청 시 “발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요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제 25 조 【화재예방】

-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 내 화재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 용접허가를 득하고, 소화기의 비치 및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작업 시 사용한 기름, 걸레, 장갑 등을 작업장 내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사용하고 남은 오일, 윤활유, 그리스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철제함 제작설치)하고, 기계실내 흘린 기름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⑤ 기계실, 트러스 하부에 흘린 윤활유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 ① 시정 : 본 계약 또는 과업지시서 미 이행 시 서면 또는 구두로 조치
- ② 주의 : 시정요구 미 이행 시 서면으로 조치
- ③ 경고 : 주의 3회 이상 누적 시 서면으로 조치

제 27 조 【계약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제1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나. 계약체결 전 ·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자”를 중상, 모략, 비방하여 “발주자”的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的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라. 계약기간 중 “발주자”的 재산을 소유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마. 보수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 “발주자”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인력투입 계획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제9조(제출서류) 참조

사. “계약상대자”가 해산, 청산, 파산, 부도, 화의, 합병이나 회사 사업 분할, 워크아웃,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아.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중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상대자”的 정상적인 사업 지속성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주자” ·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하며(①항 바 제외),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발주자”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규용역 착수 시까지 인력, 장비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그 밖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④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的 시설을 훼손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的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자”的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제 28 조 【조문해석】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는 계약 전 의견을 제시하여 상호 조정하되, 계약 후에는 “발주자”的 해석은 우선 한다.
-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업무 수행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특 기 사 항

제 1 조 【과업 범위】

□ 유지보수인력 과업 범위

① 자체점검

가. 기기 각 부분을 육안·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차기 점검시 까지 정상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부품을 정비하는 것으로, 월 1회 이상 월간법정점검에 의거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점검보수일지
- 2) 용역결과보고서
- 3) 자체검사표

나. 과업성과물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점검보수일지 : 항목별 점검내용, 청소주기, 점검결과 등과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정하는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
- 2) 용역결과보고서 : 점검실적, 계획, 고장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건수, 미조치 사유, 소모자재사용내역, 부품교체내역, 점검자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 비

기기 각부를 조정, 주유, 부품 교체 등을 시행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기의 수명을 보전하기 위한 정비로서 무상(인건비, 자재비 포함)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소모성 부품의 원형 유지(파손발견 시 즉시 교체)
- 나. 이상소음 및 진동, 마찰부 이상발열 등의 발견 및 조치
(모터 및 각종 회전부의 베어링 등 이상 시 즉시 교체)
- 다. 기타 볼트 등 이완부 조임, 마찰부 급유, 체인 장력조정 등
- 라. 지급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보수 및 교체

③ 고장수리

- 가. 고장이나 기기 이상 시 “발주자” 직원,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고장 신고 안내를 하여야 하며, 고장접수 시는 즉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하여야한다.
- 나. 고장원인에 대하여 원인규명 하여야 하며, 고장원인이 점검 및 정비 불량 일 경우, 이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다. 부품의 고장,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우선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고 조치한다.

④ 청 소

승강기(E/S, E/L, M/W) 제어반 내부 및 기계실 내부등 기기 각부의 이물질, 협착면지, 누유로 인한 오염물질 등을 청소용 넝마,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체 점검 시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조치한다. 또한, 외부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연1회 청소한다.

⑤ 이력관리

월간 완료계를 작성하여 제출 시(익월 5일 이내) 고장 내용에는 기기명, 고장 유형, 고장일자, 조치일자, 고장원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⑥ 부품의 교체 및 대상

- 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발주자”의 부담(계약금액기준)으로 교체하고 “발주자”에 예비품이 있을시 지급받아 조치한다.
- 나. 부품의 마모, 파손, 변형이 있을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확보하여, 이상 발생 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소모품 및 무상 부품을 제외한 부품교체 시 반드시 “발주자”에 연락을 취한 후 승인(검수절차 포함)을 득하고 작업에 임하며,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부품정산

- 가. 필요한 경우에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보유부품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대금은 정산 지급한다.
- 나. 대금 정산 기준은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부품 단가표에 가격으로 산정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중 “발주자”에 보유재고가 없을 시에는 즉시 자재수급 후 기기 성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정산한다.

⑧ 부품교체 제외 범위

다음의 각 항목은 부품교체 범위에서 제외한다.

- 가. 승강기의 성능을 Upgrade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교체
- 나. 의장부품(Sill, Panel등)의 도장 또는 교체
- 다. 유상처리 부품
- 라. 부품교체를 위해 필요한 건축 관련 제반공사
- 마.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의한 설비의 개량 또는 신규 부속물 추가에 관한 공사
- 바.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품교체

⑨ 보수용 자재 공급과 사용

- 가.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부품)는 부산김해경전철 승강설비에 사용된 동일규격 및 **현대엘리베이터 순정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사용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받은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다. 보수작업 후 발생한 불용자재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 라. 기타 보수에 사용되는 소모성자재(오일, 램프, 그리스, 네마, 볼트너트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2 조 【용역의 시행】

- ① 월별 점검시간은 **대당 표준점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승강기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중지의 원인이 되는 부품의 노후상태를 체크하고 교체 필요 부품은 “발주자”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노후화된 주요부품(스텝롤러 및 핸드레일, 브레이크 전원부 등)은 우선순위 또는 중보수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점검 및 정비, 보수를 실시할 때는 승객 및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표지판이나 점검보수 등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승강설비(E/S, E/L) 상·하부 출입구에 설치하고 시행한다.
- ⑤ 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항상 확보하여야 하고 부품의 교체시기 판단부족에 따른 부품의 미확보로 고장의 조치가 지연될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⑥ 점검 및 정비 주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해 조정을 요할 시에는 1주일 전에 감독자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조 【중보수 작업】

- ① 중보수작업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노무비, 자재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된 해당금액(단가)을 기준으로 보수물량에 따라 정산 처리 후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② 중보수 작업 품목 【붙임1 참조】
 - 가. 에스컬레이터 : 핸드레일, 스텝롤러, 역주행방지장치, 잭샤프트, 드라이브 유닛, 구동부, 주브레이크, 클라스, 스텝체인
 - 나. 엘리베이터 : 주로프, 권상기, 시브류, DOOR ASSY
- ③ 공정별 보수물량 및 기준
 - 가. 보수물량은 승강기 중보수 발생에 따라 승강기 중보수 및 부품교체(예정)

자료 【첨부 2】 보다 적거나 없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정별로 예정물량을 초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중보수 부품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중보수 품목이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별도로 수선 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타 보수업체에서 보수 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중보수 작업 공정별로 보수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보수기한 내 자재 반입 및 교체, 청소, 시운전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계약 전반의 모든 이행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가. 텐어라운드, 스프라켓, 퀸상기, 드라이브유닛 :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스텝롤러, 스텝체인 :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다. 역주행방지장치 :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주로프 :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마. 핸드레일, 잭샤프트 :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바. 상기 중보수부품은 제조사 인증 제품을 사용하며, 순정품,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상기 품목 외 중보수교체 및 기타부품교체는 매회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이며, 중보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업을 완료하여 승강기 비운행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부품교체(중보수 포함) 이 외의 승강설비 성능개선 또는 개보수 작업의 대하여 견적 및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작업의 착수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보수예정일, 작업인원 등이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수작업 중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확인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보수작업 완료상태를 확인 후 기기 정상기능 확보, 주변 정리,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량하다고 판정될 경우 재시행을 지시할 수

있다.

- 라. 보수실적에 대한 작업완료확인서 등의 서식 및 기록사항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보수기한 내에 완료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승강설비 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 중 발생한 장비 및 부품파손은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보수작업 여건에 따라 주간 및 야간작업,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승강기 비운행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점검 또는 보수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⑦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작업완료확인서에 감독자 확인 및 “발주자”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공정별 하자보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하자보증증권 또는 하자보증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하자보증기간 3년 : 스텝체인 전체 교체, 스텝롤러 전체 교체, 핸드레일, 주로프
- 나. 하자보증기간 1년 : 상기 가.의 품목을 제외한 중보수(스텝체인 부분교체 포함) 및 기타부품

제 4 조 【검 사】

- ① 검사는 감독자가 월 점검보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전 용역대상에 대한 전수검사
 - 나. 일부용역대상에 대한 표본검사
 - 다. 과업지시 이행확인을 위한 검사
 - 라. 기타 필요시 시행하는 수시검사 등

- ②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사 또는 과업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단, 거부 또는 불이행 시는 조치 시 까지 보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수선(임가공)·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2 조 【적용범위】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3 조 【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4 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5 조 【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6 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7 조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② “발주자”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차수 시 “발주자”가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계약 중지 등】 ① “발주자”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중지로 발생되는 자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7., 2022.5.27.>

제 9 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1. 「중대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22.5.27.>]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끝.

[붙임 1]

승강기 중보수 부품

에스컬레이터	
품명	비고
• 스텝롤러 교체	고장발생시
• 핸드레일 교체	"
• 스텝체인 교체	"
• 잭샤프트 교체	"
• 드라이브 유닛 교체	"
• 구동부 교체(SPROCKET)	"
• 주브레이크 교체(라이닝포함)	"
• 글라스 교체	"
엘리베이터	
품명	비고
• 주로프교체	
• 권상기 교체	고장발생시
• 시브류 교체	"
• DOOR ASSY 교체	"

[붙임 2]

보수업체 보유장비

장비명	비고
· 조도계(1대) : 엘리베이터 카내 조도 측정	
· 순간식 회전속도계(1대) : 주행속도 및 굴곡속도 측정	
· INVERTER ENCODER (OPP-2000, 톤, 인버터키보드 등) : 에러코드확인 및 인버터 제어	STVF-5 점검용
· 공업용 진공청소기 또는 콤프레셔 : 협착물 청소 및 정비	

[붙임 3]

부산-김해경전철 승강설비 현황

구분	전체역수	설치역수	설치수량	형식별		비 고
				1000형(내부)	1200형(외부)	
E/S	21역 1기지	7역	28대	5대	23대	
E/L		21역 1기지	81대	(45대)	(36대)	

에스컬레이터(E/S, M/M)			엘리베이터(E/L)				
역 명	대수	1000형	1200형	역 명	계	내 부	외 부
소계	28	5	23	소계	81	45	36
사상	9	-	9	사상	4	2	2
광교	2	2	-	광교	3	2	1
서부산	4	-	4	서부산	4	2	2
공항	4	-	4	공항	2	2	-
덕두	2	2	-	덕두	4	2	2
대저	6	-	6	등구	4	2	2
평강	1	1	-	대저	4	3	1
				평강	3	2	1
				대사	4	2	2
				불암	4	2	2
				지내	4	2	2
				김해대학	4	2	2
				인제대	4	2	2
				김해시청	4	2	2
				부원	4	2	2
				봉황	4	2	2
				수로왕릉	4	2	2
				박물관	4	2	2
				연지공원	4	2	2
				장신대	4	2	2
				가야대	3	2	1
				차량기지	2	2	

[붙임 4]

유지보수용역 면책사유에 대한 세부기준

비운행 제외(과업지시서 제12조 관련)

구 분	고장(장애) 내용	사 유	비 고
에스컬레이터	동작기능에 지장 없는 스위치 캡 일부파손	정상운행	
	표시램프 소등	"	
	플레이트 틈새, 흔들림 등(안전 위해시 제외)	"	
	각종 표시물(부착물) 훼손	"	
	정상운행 및 고정상태와 관계없는 볼트 이완	"	
	안내방송장치	"	
	기타 에스컬레이터와 관계없는 고장신고(소음, 진동 등)	"	
엘리베이터	동작기능에 지장 없는 스위치 캡 일부파손	"	
	각종 표시물(부착물) 훼손	"	
	정상운행과 고정상태와 관계없는 볼트 이완	"	
	표시램프 소등	"	
	안내방송장치	"	
	기타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고장신고(소음, 진동 등)	"	

외부의 충격에 의한 고장(과업지시서 제12조 관련)

구 分	고장(장애) 내용	사 유	비 고
에스컬레이터	스커드가드 안전스위치 동작	외부충격	
	인입구 안전스위치 동작	이물질 투입	
	비상정지스위치(E-STOP) 동작	고의동작	
	콤스위치 동작	이물질 협착	
	스텝파손	외부충격	
	감지센서 장애물 협착	고의동작	
	외장재 파손	외부충격	
엘리베이터	침수로 인한 장애(빗물, 청소용수 등)	외부요인	
	부하측 차단기 트립(제어전원측 제외)	과중량	
	외장재 파손	외부충격	
	출입문 장애물 협착	고의	
	구출 목적으로 고의파손 행위(사용자 부주의 적용)	외부충격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2]

경영 실태(2021년)

구 분	2021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자본은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의 감사 결과 인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 ※ 모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 필

[서식-3]

유지보수 사업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자	책임기술자	비고
합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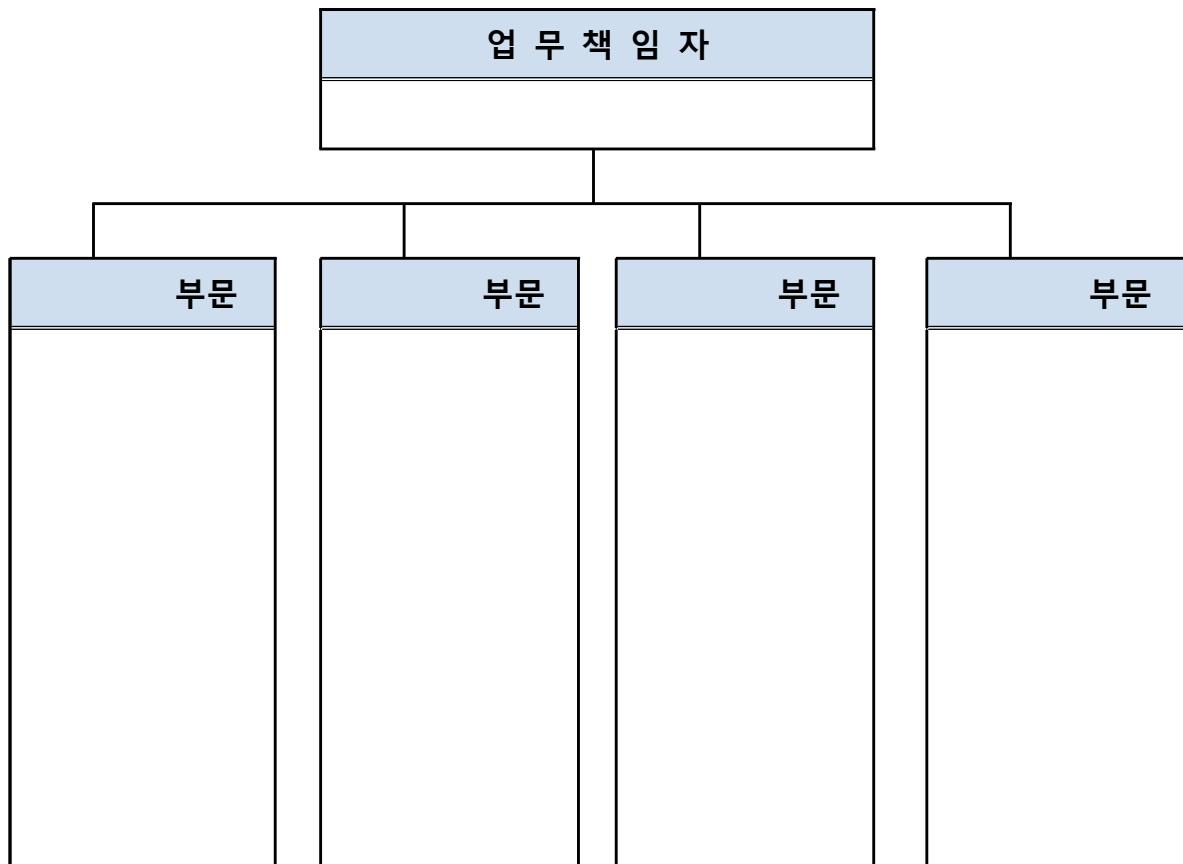
- 최근 3년 이내(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 모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 필

[서식-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업무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5]

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기술등급*	<input type="checkbox"/> 고급 <input type="checkbox"/> 중급 <input type="checkbox"/> 초급		주민등록번호	- *****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득년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input type="checkbox"/> 상주 <input type="checkbox"/> 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단, 의료보험 가입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6개월전 이어야 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자	비고

※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6]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10	
D. 재해발생 수준	10	
E. 안전인력	20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일반원칙	○ 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B.실행수준	소계	40	
3.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	10	
4.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6.안전작업허가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아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운영관리	소계	10	
7.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8.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재해발생 수준	소계	10	
9.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	10	
E.안전관리자	소계	20	
10.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교육 건설업(중보수)	10	
11.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교육 제조업 등(유지보수)	10	